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38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김영배 · 조승래 · 이학영
전은수 · 손명수 · 한정애
정준호 · 장종태 · 이기현
김원이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복잡한 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조문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정의를 삭제함(현행 제3조제12호 삭제).
- 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사회재난대책법」”을 명시하고, 조문 이관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
- 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 삭제).
- 라.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제21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 및 「사회재난대책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4.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26조제1항에 따른”을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재난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회재난 관리지역에 관한 조치

6.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의3 중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을 “제31조제1항”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사회재난대책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삭제>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사회재난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략)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생략)

1. ~ 4. (생략)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 8. (생략)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
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
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
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
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현
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재난대책법」 제5조제2
항에 따른 사회재난 관리지역
에 관한 조치

6. 「사회재난대책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
리

7. ~ 8.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삭 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삭 제>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
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
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
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
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삭 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
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
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
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
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
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
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
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
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
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
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
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

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
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
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
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삭 제>

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집으
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
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
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
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
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
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
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
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
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
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
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
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
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